

## 한남대학교회 학관 생활규칙

대학교회 사무실

042-629-7217

### 제 1조(지원 자격)

학관은 한남대학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한남대학교회에 출석하는 자(또는 출석예정자)로 하되, 한남대학교 학부 재학생과 신입생에 한한다.(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거주 불가)

### 제 2조(학관 예절)

학관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야 하며, 신앙훈련 및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제 3조(공용물 사용)

1.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유의한다.(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파손, 손실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2. 학관생은 배정된 방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방배정은 담당 교역자와 방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방장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 4조(자치 활동)

학관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방장은 학관의 제반사항을 담당 교역자와 상의한다.

1. 학관담당자: 담당 교역자
2. 방장(2명): 남학관 1명, 여학관 1명

### 제 5조(학관 생활)

1. 귀가시간은 23:00로 규정한다.
  - 1) 보고체계는 방원이 방장에게, 방장은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 2) 합당한 이유(학원, 교통문제 등)로 늦은 귀가(11시 이후)를 할 경우에는 외박하는 당일 저녁 7시 전까지 방장과 상의 후 개별 귀가시간을 정한다.
2. 비학관생의 학관 출입은 일체 금지한다.(가족의 방문 시, 하루 전에 방장 및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린다.)
3. 공식적인 모임 외에 남학관생이 여학관에, 여학관생이 남학관에 출입하지 않는다.
4. 매학기 성적은 B(3.0) 이상이어야 한다. 성적표를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하고, B 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는다.
5. 학관비는 1년에 2회 납부하며 1회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납부한다. 납부 시기는 개강 전후 3주간(2월 말-3월 중순, 8월말-9월 중순)으로 담당 교역자가 정한다. 단, 학기 중 퇴사 시에는 학관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6. 학관내의 청결을 위하여 청소구역과 담당자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청소한다.
7. 외박은 대학교회 모든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월 2회 사용할 수 있다. 외박 시 방장은 담당교역자에게 보고하고, 담당교역자의 허락 하에 외박을 할 수 있다.(단, 이틀 연달아 외박할 수 없다.)
8. 고향 방문은 방학 중 월 1회(최대 한 주간) 가능하며, 학관생 절반 이상이 동일한 날짜에 겹치지 않도록 한다.
9. 방학기간에도 동일하게 대학교회를 섬겨야 한다.
10. 주 1회(2-3시간) 사무실 근무(학기 중에는 공강 시간 활용, 선교훈련 준비기간은 제외)를 한다.

**제 6조(신앙훈련과 공동체 모임)**

1. 대학교회 주일예배/주일 대학부모임/수요예배/학관 경건회는 필수 참석해야 하며, 토요일에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 주일예배 준비를 한다. 주일에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 (1인 1부서 봉사)
2.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행사,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는 학원선교 행사에 참여한다.  
(대학교회 행사, 대학부 관련 행사, 기독교생연합회, 기숙사채플 섬김 등)
3. 해외 단기선교 훈련에 학관생은 필히 참여한다.(참여가 어려운 경우, 담당교역자와 상의한다.)  
해외 단기선교 준비는 2학기 종강 후 곧바로 시작한다.
4. 학관 경건회가 있을 시 참석해야하며, 학관생들은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 7조(벌점)**

벌점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벌점이 합계 20점이 되면 경고를 통해 다음 학기 입사가 불가하고, 30점이 되면 1개월 내 퇴사하도록 명한다.

<표 1> 학관생활규칙 위반 시의 벌점

항	내 용	벌점
1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필수 참석 모임에 무단으로 불참한 자	10점
2	타당한 이유 없이 각종 교회 행사나 모임에 불참한 자	5점
3	욕설, 폭행, 음주, 흡연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를 일으킨 자	15점
4	사전고지 없이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외박을 한 자	10점
5	거짓, 속임, 이간질, 가스라이팅으로 피해를 끼친 자	5점
6	무단으로 남자를 여학관에 여자를 남학관에 출입시킨 자와 출입한 자	10점
7	공동체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자	5점